

#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최호정 의원입니다.

□ 「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제정안은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에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지 않고,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」을 적용해 온 것을 개선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.

□ 상위법령인 「공무원 행동강령」상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 하여 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.

- 본 제정안은,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부터 제3조), 공정한 직무수행의 자세 및 의무(안 제4조부터 제9조), 부당이득 수수 금지(안 제10조부터 제17조),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의무(안 제18조부터 제19조), 조례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(안 제20조부터 제24조).
  
-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제정함으로써 청렴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의정을 실현하며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  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
- 이러한 제정안 취지를 살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  
- 감사합니다.